

1998년도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

농림부는 "1998년도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"을 작성하고, 전국 수의관련 기관에 배포하였다.

따라서, 각 기관은 금년중,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및 실시요령에 따라, 예방접종, 검진사업, 질병진단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게 된다.

본회 학술홍보위원회에서는, 금년도 추진하여야할 가축방역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회원에게 널리 홍보하므로써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자 한다.

본 편에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에 문의하시거나, 본회 학술홍보위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편집자 주

1. 목적

-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절감,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제고
-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
- 인수공통전염병 피해예방을 위한 혈청검사·검진사업 확대실시로 국민보건 향상

2. 추진방향

- 돼지콜레라, 돼지오제스키병, 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
 - 전염병 조기근절을 위한 예방주사 및 검진물량 대폭 확대 실시
- 지역별·축종별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활성화 추진
 - 지역축협, 양축농가단체, 계열주체농가, 전기업 양축농가, 공·개업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 구성·운영
-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지역방역센터로 육성·지원
 - 가축방역 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인식교육 강화
 - 병성감정 전문인력 양성 및 정밀검사장비 지원 확대
 - 기동방역진료차량 지원으로 현지 긴급방역 조치 등 초동방역 실시
- 도축장·도계장의 방역관리 강화 및 혈청검사 확대 실시
 - 도축장·도계장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로 발생농장 추적조사 및 신속한 방역조치
 - 가축수송차량 소독시설과 닭 수송용기를 지원하고 도축장·도계장 소독실시 의무화로 농장간 전염병 전파방지
- 종돈장, 종계장 위생관리 강화
 - 위생·방역관리 우수농장 등급인증제 시행으로 증축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 근원적 차단
- 가축질병예찰업무 강화로 선진 방역대책 추진
 - 관내 공수의,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적극 활용한 예찰업무 활성화
 - 양축농가에 적기 예방실시 홍보 강화
- 병성감정 실시기관 확대지정 및 진단액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질병진단 편의 도모
-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신규개발 보급 및 품질개선으로 가축질병

피해예방효과 거양

3. 근거법령
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(비용의 부담) 및 제34조(보상금)
 - 주사, 검사, 투약, 소독실시 소요비용 : 국비 50% 이상 부담
 - 살처분보상금 : 국비 100%
 - 가축위생시험소 시설, 장비 보조지원 : 국비 50%, 지방비 50%
- 수의사법 제22조(공수의 수당 및 여비)
 - 수당과 여비를 지급

4. 사업개요

가. 가축방역사업 총괄

(단위 : 천원)

| 사업명 | 사업량 | 사업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● 진단액· 긴급방역비 | - | 1,017,500 |
| ● 살처분보상금· 도태장려금 | 222천두 | 3,578,000 |
| ● 수의사연수교육 | 400명 | 40,000 |
| ● 자치단체경상보조 | | |
| - 예방주사 | 283,750천두 | 9,128,950 |
| - 검진 | 699* | 777,790 |
| - 기생충구제 | 1,629* | 1,800,100 |
| - 가축혈청검사 | 1,685* | 582,760 |
| - 오제스키병근절 | 294* | 558,600 |
| - 예방접종 | 74* | 184,500 |
| - 공수의수당 | 252명 | 1,520,640 |
| ● 공동방역사업단지원 | 80개소 | 2,800,000 |
| ● 도축· 도계장 소독시설 | 40개소 | 3,763,500 |
| ● 가축방역교육· 홍보비 | - | 74,000 |
| 가축방역 합계 | 288,353 | 25,826,340 |
| ●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| | |
| - PCR | 14대 | 350,000 |
| - 소각로 | 15기 | 2,700,000 |
| - 이동방역진료차량 | 19대 | 285,000 |
| - 소독시설 | 23기 | 690,000 |
| 소 계 | 71(기·대) | 4,025,000 |
| 합 계 | 288,353 | 29,851,340 |

나.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

(별첨참조)

(1) 목적

- 예방주사 : 급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 및 공중위생 향상
- 검진 : 우결핵, 부루세라 등 만성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, 양성축을 살처분 또는 도태하여 가축전염병 근절 유도
- 구제 : 가축에 기생하는 내·외부 기생충을 구제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

(2) 사업집행기관 : 시·도지사

(3) 사업시행기관

-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 : 시장·군수
- 검진·혈청검사 등 :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(지소장 포함)

(4) 사업시행절차

- 예방주사 : 시·도지사가 사업계획에 의거 예방약품 등을 구입한 후 시·군별로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대상농가의 가축에 예방주사 실시(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예방약품 및 공수의사를 해당 사업단에 우선 지원)
 - 예방주사별 대상질병 (탄저·기종저, 전염성비기관염, 유행열, 소부루세라병, 아까바네병, 돼지콜레라, 일본뇌염, 돼지전염성위장염, 돼지오제스키병, 광견병, 진도견디스토퍼 등(DHPPL), 뉴캐슬병)
- 검진 :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, 전염병별 검사 실시(채혈후 실험실 검사 또는 진단액 점종 등)
 - 검진내역별 대상질병(우결핵, 부루세라(MRT), 부루세라(Plate), 부루세라(Rose-Bengal), 추백리)
- 구제 : 시장·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구제약품을 대상농가에 지원
 - 질병별 구제사업 (소진드기, 소간질충, 꿀벌응애류, 꿀벌노제마병)

(5) 사업비 지원

- 농림부장관이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거 매월 사업비를 시도에 재배정

(6) 사업실적 보고

- 보고기한 : '99. 1. 15까지
- 보고서식 : 가축방역사업 실적보고에 의함

다. 가축혈청검사사업

(1) 목적 및 필요성

-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, 질병감염 여부 및 질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,
- 검사결과를 따라 예방접종 적기실시 지도 및 질병 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

(2) 사업시행기관

- 수의과학연구소 : 진단액 등 생산 및 기술지도
- 가축위생시험소 : 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
-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: 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

(3) 검사대상 질병 : 20종

- 닭 : 뉴캐슬병(ND), 산란저하증(EDS '76), 감보로병(IBD), 전염성기관지염(IB), 마이코플라즈마(MG)(5종)
- 돼지 : 단독(SE), 위축성비염(AR), 일본뇌염(JE), 마이코플라즈마병(MP), 돼지파보(SP),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(PRRS), 돼지콜레라(HC), 돼지전염성위장염(TGE), 돼지유행성설사(PED), 로타바이러스 감염증(Rota)(10종)
- 소 : 요네병(JD), 유행열(EF), 아까바네병(AD), 이바라기병(ID), 추산병(CD)(5종)

(4) 실시방법

① 닭 혈청검사

- 검사대상 선정
 - 검사를 요청한 양계농가를 우선하고, 종계장에서 직접

채혈하거나 당해 종계장에서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,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

- 가검물 채취 : 매월 균분 실시

② 돼지 혈청검사

● 검사대상 선정

- 혈청검사를 요청한 양돈농가를 우선 실시
- 종돈장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 (1개 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)
-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하여 제주도내 각 지역별로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(농가당 20두)를 대상으로 항원 및 항체검사 실시

● 가검물 채취 : 매월 균분 실시

③ 소혈청검사

- 모기매개질병(유행열, 아까바네병, 이바라기병, 추산병) 예방을 위하여 시도별로 '98. 3월말까지 항체가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의과학연구소에 통보
- 수의과학연구소는 전국적인 분포로 작성
- 요네병은 관내 젓소를 대상으로 사업량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여 국내 분포조사를 실시

(5) 사업량 : 연 1,197,900건

● 닭 : 512,800

- 시험소 488,000건 : 97,600수 × 5종(ND, EDS, IBD, IB, MG)

- 병성감정기관 24,800건 : 12,400수 × 2종(ND, MG)

● 돼지 : 564,100건

- 시험소 : 529,100건

· SE, AR, JE, SP, MP 418,000건 : 83,600두 × 5종

· PRRS 25,100건 : 25,100두 × 1종

· HC 56,000건 : 56,000두 × 1종 (제주도 HC 청정화사업 6,000두 포함)

· TGE, PED, Rota 30,000건 : 1,000두 × 3종

- 병성감정기관 : 35,000건

· SE, AR, JE, SP, MP 32,000건 : 64,000두 × 5종

· TGE PED Rota 3,000건 : 1,000두 × 3종

● 소 : 121,000건

- 시험소 : 121,000건

- HF, AD, ID, CD 등 모기매개질병 96,000건 : 24,000두 × 4종
- 요네병 25,000두 : 25,000두 × 1건

(7) 검사결과 조치사항

- 혈청검사성적을 조사분석하여 면역역가, 백신접종 적기여부, 접종방법의 개선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농가에 즉시 통보하여 자율방역에 활용토록 할 것. 특히 돼지콜레라 항체검사에서 음성인 농장에 대하여는 백신접종토록 적극 계도할 것
-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채혈한 혈청의 검사 및 분석 결과는 출하농장이 타시도일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도에서 방역지도 및 예찰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
- 타 시도로부터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가 통보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
- 요네병 양성우에 대하여는 동 질병의 특성을 홍보, 자진 도태토록 유도
- 제주도지사는 돼지콜레라 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돼지는 살처분토록 할 것

(8) 기타

- 우수 종돈·종계장 인증을 위한 혈청검사
 - 각 시·도지사는 우수 종돈·종계장 신청을 받으면 검사에 필요한 진단액을 미리 농림부에 요구하여 배정을 받을 것
 - 가축위생시험소별로 혈청검사 인력을 고정배치하여 진단기술 배양 및 전문화를 유도할 것
 - 수의과학연구소장은 긴급방역, 병성감정 또는 시험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 인플루엔자, 돼지설사병 등의 항원을 생산하고 당부에 보고할 것

(9) 보고

- '98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4권 "축산사업 보고 별첨서식 2" 제1번에 의거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

라.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

(1) 검진사업

① 목적

-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 및 허가·등록된 양돈장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오제스키병 감염축을 색출·도태하고,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오제스키병 발생상황 조사와 출하농장 추적조사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·추진코자 함

② 사업실시기관

- 검사기관 : 가축위생시험소(지소 포함)
 - 오제스키병 감염진단키트 및 간이진단키트를 시도별로 구입하여 검사기관에 배정
- 기술지도기관 : 수의과학연구소

③ 검사대상

- 종돈장 및 허가·등록된 양돈장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
-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중 사육농장이 확인될 수 있는 돼지

④ 실시방법

- 종돈장 :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별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여 년2회 검사 실시 (상반기 : 5~6월, 하반기 : 9~10월)
- 허가·등록된 양돈장 등 : 년 2회 검사 실시
- 도축장 출하돼지 : 농장별 20두 기준으로 검사 실시

⑤ 사업물량 : 294,000두 (각시도별 총계)

-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도의 사육실태 및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종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

⑥ 검사결과 조치

- 종돈장과 양돈장에 대한 검사실시결과 양성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즉시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규정된 긴급방역조치를 할 것
- 발생농장 인근지역과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, 동 질병방역

에 대한 지도·계몽을 강화할 것

-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검사는 매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되, 검사대상 돼지는 출하농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확인·선정등록 할 것이며, 각 시도지사는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'98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4권 '축산사업보고 별첨서식 2' 제2번에 의거 집계 보고하고, 양성축 검색시에는 추적조사 결과를 즉시 보고할 것이며,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
- 종돈장과 양돈장 검사실시 결과는 분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'98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4권 "축산사업보고 별첨서식 2" 제3번에 의거 보고할 것이며, 양성축 판정시에는 즉시 보고할 것

⑦ 기타

- 시도지사는 도축검사신청서(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)에 돼지 출하농장의 기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도축업무와 연계하여 출하농장에 대한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

마. 유방염 방제사업

(1) 목적

- 유대지급 차등가격제(세균 및 체세포수) 적용이 실시됨에 따라 유방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 추진으로 각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 우수 생산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

(2) 실시기간 : '98. 1 ~ 12월

(3) 실시기관 :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

(4) 사업량 및 사업비 : 73,800두, 184,500천원

※ 실시재료비(CMT 시약등) : 두당 2,500원

(5) 대상농가 : 집유장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3급(50만 초과 /ml당) 판정농가 우선 실시 하고, 검사의뢰분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 실시

- 시도지사는 체세포수 4급 농가를 파악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본·지소별로 사업물량 조정

(6) 세부 실시요령

- 체세포수 4급판정 농가의 착유우에 대한 개체별, 분방별로 CMT 및 체세포수 검사 실시
 - 체세포수 50만개 /ml 이상을 유방염 감염 의심우로 판정
- 개체별 검사결과 유방염 의심우에 대해 분방별로 원인균 분리
- 원인균에 대한 약제감수성시험 실시
- 유방염 감염우, 감염분방, 원인균 및 약제시험결과를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자가 치료토록 지도

(7) 기타

- 시도지사는 분기실적을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'98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4권 '축산사업보고 별첨서식 2' 제4번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할 것

바.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

(1) 목적

- 가축전염병(우결핵, 부루세라병, 돼지오제스키병, 돼지콜레라, 추백리 등)에 이환된 양성축을 조기색출, 살처분하여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
- 전염병 발생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피해방지
-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축산의욕 고취

(2) 지급계획물량 : 221,750두·수

● 살처분 보상금

- 소 : 550두 (젖소 250두, 한육우 300두)
- 돼지 : 20,000두
- 닭 : 200천수

● 도태장려금

- 돼지 : 1,000두
- 소 : 200두

(3) 재원 : 3,578백만원(국비)

(4) 사업주관 : 농림부 및 시·도

(5) 지급대상

- 전염병 발생시 가축방역관의 명령에 의하여 살처분된 소, 돼지 및 닭에 한하여 살처분 보상금 지급
- 소부루세라병 발생 농장의 동거가축 및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 양성으로 확인된 모돈의 조기도축 출하시 도태장려금 지급

(6) 지급기준
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농림부 고시 제97-31호에 의거 지급

(7) 기타

- 살처분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건비, 소독비, 소각로 운영비, 매몰비 등은 필히 지방비로 확보할 것
- 평가액 산정은 평가인이 상호비밀 유지하여 평가하고 당부에서 정한 평가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
사. 가축 위생시험소 지원

(1) 목적

- 새로운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고,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손실방지
- 신속한 질병감정 및 원인분석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양축농가의 방역지원
- 살처분 가축의 매몰처리를 소각처리 방법으로의 전환으로 민원해소, 환경보전 및 전염병 확산 방지
- 전염병 발생시 기동방역진료차량을 이용, 신속한 현지 기동방역 실시

(2) 사업량 및 사업비

- ① 검사장비 구입(PCR) : 14대, 350,000천원
 - ② 소각로 설치지원 : 15대, 2,700,000천원
※소각로 설치에 따른 사체 보관장, 준비실 등 부대시설 비용은 지방비에서 확보 충당할 것
 - ③ 기동방역 진료차량 구입 : 19대, 285,000천원
 - ④ 가축위생시험소 출입차량 소독시설 : 23대, 690,000천원
- (3) 사업시행자 : 가축위생시험소장
(4) 사업감독 및 사후감독 : 해당도지사
(5) 구입원료시기 : 소각로와 기동방역진료차량은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추진을 위하여 '98상반기 중에 구입 완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

아. 공수의 위촉

(1) 목적

- 가축전염병 예방주사, 진료, 검진 및 예찰 등 가축 방역사업에 공수의 활용으로 축산업 보호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

(2) 시도별 국비 공수의 정원

| 구 분 | 계 | 일반지역 | 특별지역 |
|-----|-----|------|------|
| 계 | 252 | 247 | 5 |
| 대 구 | 1 | 1 | - |
| 인 천 | 4 | 3 | 1 |
| 광 주 | 1 | 1 | - |
| 경 기 | 29 | 29 | - |
| 강 원 | 24 | 24 | - |
| 충 북 | 20 | 20 | - |
| 충 남 | 32 | 32 | - |
| 전 북 | 27 | 27 | - |
| 전 남 | 36 | 33 | 3 |
| 경 북 | 39 | 38 | 1 |
| 경 남 | 34 | 34 | - |
| 제주 | 5 | 5 | - |

- 국비 공수의 감축조정에 따라, 공수의가 부족한 시도에서는 지방비 공수의를 위촉·운용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실시토록 할 것.

(3) 배치기준 및 월 수당

| 구 분 | 배치기준 | 월 수 당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| | 계(천원) | 국 비 | 지방비 |
| 일반지역 | 읍·면 소재지이상 | 490 | 245 | 245 |
| 특별지역 | 도서 및 특수오지 | 1,138 | 569 | 569 |

※ 지방비 소요예산을 확보한 시도에서는 위 기준에 불구 수당증액 지급 가능

(4) 공수의 수당내역 : 계 152,640천원

(국비 760,320천원,

지방비 760,320천원)

(5) 공수의 위촉 및 배치기준

- 예방주사, 순회진료, 질병예찰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65세미만의 개업수의사
- 관내양축가로부터 신뢰도가 높고, 진료·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

- 위촉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위촉을 지양
- 위촉기간중 공수의업무 참여실적이 미흡할 경우 즉시 해촉
- 매년 12월에 공수의 업무평정을 실시하여 당해년도 업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후 위촉
 - 업무 평가 : 시도, 시군, 관할 가축위생시험소(지역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시군의 경우 해당 사업단이 평가 참여)
 - 각 시·도에서는 관내지역 순회진료 및 방역사업 적극 참여도, 업무평가 결과와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(지소장 포함)의 추천의견 등을 종합하여 위촉시 반영
- 가축 사육두수 및 정부지원 예방주사 실시물량을 기준으로 배치하되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지역 우선 배치

(6) 업무감독

- 공수의 준수사항(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)에 대한 지휘·감독

(7) 행정사항

- 배치지연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'97. 12. 30일까지 전원 위촉, 배치하고 결과를 '98. 1. 15일까지 보고
- 공수의에 대한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(해촉과 동시 위촉할 것)
- 매월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수의 업무 보고사항을 취합하여 익년도 1. 30일까지 보고

※ 배치완료 보고 및 공수의 업무수행 상황보고는 '98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"축산사업 보고 별첨서식 2" 제5번 참조

(8) 기타사항

- 공수의 업무 관련기관
 - 중앙 : 농림부 가축위생과 (☎ 02-504-9438, 02-500-2693)
 - 시도 : 농림수산국 축산과 (농정과)
 - 시군구 : 산업과(축산과)
- 공수의의 추가 위촉·활용이 필요한 시도에서는

소요 지방비 확보예산범위내에서 지방비 공수의를 위촉·운영

- 공수의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축농가로 하여금 예방접종시 가축보정, 공수의와 축주합동 실시사항 협조 희망
-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시군의 경우 공수의가 해당 사업단 소속방역요원을 지휘·감독하에 예방주사 실시

자. 수의사 연수교육

(1) 추진방향

- 선진 수의기술 보급으로 수의사의 자질향상 및 수의업무 발전도모
- 새로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료기술 습득으로 축산소득 증대 기여

(2) 사업내용

- 사업주체 : 대한수의사회
- 사업비 : 40,000천원(국비)
-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'98 수의사연수교육 세부추진계획을 '97. 10.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.

(수의사 보수교육)

- 교육내용 : 가축질병에 대한 임상이론 및 실기교육
- 교육기간 : 1일 × 13회
- 교육인원 : 2,000명
- 교육대상 : 공개업 수의사 또는 일반 수의사로서 희망자

(수의사 임상강습회)

- 교육내용 : 가축위생정책 및 임상교육
- 교육기간 : 1일 × 2회
- 교육인원 : 500명
- 교육대상 : 공개업 수의사, 행정·연구 및 기타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

(3) 안내기관 : 대한수의사회(02-392-2526)

예방주사

★ 탄저·기증저 혼합

- 실시대상 : 4개월 미만의 송아지와 임신말기의 소를 제외한 소
- 실시기간 : 2~4월
 - 전년도 발생지역과 인접시군에서는 9~10월에 접종누락된 소에 추가 실시

● 소요경비

- 약품비 : 두당 150원
 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 - 지방비 : 100%

● 실시요령

- 농번기를 피하여 2월부터 조기 실시토록 사업준비
- 경기, 강원, 충남, 경북은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
- '97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소를 우선 실시

★ 소 전염성비기관염

- 실시대상 : 소
- 실시기간 : 9~10월
- 소요경비

- 약품비 : 두당 1,500원
 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 - 지방비 : 100%

● 실시요령

- 소 전염성비기관염, 바이러스성 설사(BVD) 및 파라인푸루엔자 (PI) 혼합 백신을 사용
- 공동방역사업단에 참여한 농가 및 영세 양축농가의 사육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기업 양축농가의 소는 자율방역 유도

★ 소 유행열

- 실시대상 : 6개월령 이상의 소
- 실시기간 : 4~5월
- 실시방법
 - 모기 출현전에 실시 완료

- 6개월령 이상소에 3~4주 간격으로 2회 접종
- 전년도 접종소는 매년 1회 보강 접종

● 소요경비

- 약품비 : 두당 2,000원
 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 - 지방비 : 100%

● 실시요령

- 대양축농가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사업계획 대상이외의 소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유도
- 공동방역사업단 참여농가 및 영세 양축농가에서 사육하는 소를 우선 실시

★ 소 아까바네병

- 실시대상 : 소 (젓소 · 한우의 암소)
- 실시기간 : 4~5월
- 소요경비

- 약품비 : 두당 3,500원
 - 국비 : 70%
 - 지방비 : 30%
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 - 지방비 : 100%

● 실시방법

- 모기 출현전에 매년 1회씩 접종할 것
- 사업계획 대상이외의 소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농가에 홍보지도 강화
- 영세양축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에 대하여 우선 실시
- '97년도 감염우는 실시대상에서 제외

★ 부루세리병

- 실시대상 : 4개월이상된 젓소
 - 제주도는 4개월이상된 소(육우포함)
- 실시기간 : 2월~12월
 - 예방약품은 가축위생시험소에 보관하고 지역별 검진계획에 의거 검진대상 농장별로 접종두수를 확인한 후 접종 실시
- 소요경비
 - 약품비 : 두당 1,500원

별첨 1

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- 지방비 : 100%

● 실시요령

- 시·도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주관으로 우결핵·부루세라 검진시 농장별로 사육두수를 확인하여 시·군별로 공수의 또는 유업체의 지정수의사, 축탁수의사, 지역축협 수의사 등과 협의하여 관내 4개월 이상된 젖소 전두수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
- '97년도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

★ 돼지콜레라

● 실시대상 : 모돈 및 자돈

- 도축장·돈육·수출용 육가공장 주위의 양돈농가에 우선지원

● 실시기간별 물량

- 1차(춘계) : 3~5월(50%)
- 2차(추계) : 9~11월(50%)

●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설치 시·군에서는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지원하여 양돈농가 필요시 적기 접종토록 조치

● 적기 접종방법

- 자돈 접종법 : 생후 5~7주령, 생후 8~9주령 각1회
- 모돈 접종법 : 교배 2~4주전 1회접종

● 소요경비

- 약품비 : 두당 90원
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- 지방비 : 100%

● 실시요령

-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하여 모든 돼지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되도록 양돈농가 홍보·지도 강화
-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음성농장은 필히 예방접종토록 계도
- 종돈 및 자돈거래시에는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토록 적극계도
- 대일수출 돼지고기용 돼지출하농장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첨부무화 홍보

★ 돼지일본뇌염

● 실시대상 : 인구조밀지역 및 뇌염 발생상재지, 도시인근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

● 실시방법

- 어미돼지 우선실시
- '97년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 접종하고, 기타는 건강돈에 1차접종하고 3주후에 2차접종

● 실시기간 : 3~4월

- 모기출현전에 실시완료
- 양돈 공동방역사업단 설치 시·군에서는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지원하여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

● 소요경비

- 약품비 : 두당 300원
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- 지방비 : 100%

● 예방주사를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백신구매 및 배정시기를 감안, 차질이 없도록 조기 조치

★ 돼지전염성위장염(TGE)

● 실시대상 : 임신모돈

-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 참여농가 우선 지원

● 실시기간 : 9~11월

- 모돈에 2회접종 (분만 4주전에 1차, 2주전에 2차접종)
- 양돈 공동방역사업단 설치 시·군에서는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지원하여 필요시 적기 접종

● 소요경비

- 약품비 : 두당 400원
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- 지방비 100%

● 실시기간 물량 이외의 임신모돈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양돈농가 홍보지도 강화

★ 돼지오제스키병

● 실시대상 : 돼지오제스키병 발생 상재지 또는 발생우려지역의 돼지

● 실시기간

- 1차(춘계) : 3~5월
- 2차(추계) : 9~11월
- ※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여건을 감안 연중 실시
- **실시요령** :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에 의함
- **접종방법** : 모돈·후보돈·종돈에 접종하되 임신모돈은 2회 접종
- **소요경비**
 - 약품비 : 두당 500원
 - 국비 : 70% ·지방비 : 30%
 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 - 지방비 : 100%
- **기타**
 - 지역공동방역사업단 설치 시·군에서는 예방약을 사업단에 우선지원
 - 의심축 조기 신고한 농가, 양성축을 조기 도태한 농가, 발생농장 인근 농장 우선 실시
 - 예방접종은 반드시 관할 가축위생 시험소와 사전협의 후 실시
 - 종돈장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
 - 신규입식 농가는 오제스키병 비발생 사실확인후 또는 검사후 입식토록 계도 철저

★ 광견병

- **실시대상** : 경기, 강원외 휴전선 인접시군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와 소는 전두수 접종하고, 기타 인구조밀지역 및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에 중점 실시
- **실시기간**
 - 1차(춘계 : 3~5월) : 70%
 - 2차(추계 : 9~11월) : 30%
- ※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여건을 감안 연중 실시
- **소요경비**
 - 약품비 : 1두분 포장 550원/병
5두분 포장 1,500원/병
 - 국비 : 70% ·지방비 : 30%
 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 - 지방비 : 100%

-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소의 광견병 예방 접종용으로 1병당 5두분 포장 예방약을 구입하여 소 3두분 접종용으로 사용.
- 경기도·강원도 이외의 각 시도에서는 1병당 1두분 포장 예방약을 구입할 것.
- **기타**
 - 예방주사 일제접종기간을 설정, 공고하고 반상회등을 통하여 홍보
 - 예방주사 접종증명서 발급 및 표찰부착 철저이행

★ 진도견 디스토퍼(DHPPL)등

- **실시대상** : 진도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
- **실시기간** : 4~11월
 - 1두에 2회접종 및 투약 (10,000두 × 2회= 20,000두)
- **소요경비**
 - 약품비 : 2,500원(디스토퍼 1,500, 구충제 1,000)
 - 국비 : 70% ·지방비 : 30%
 - 실시재료비 : 두당 50원
 - 지방비 : 100%
- **기타**
 -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예방주사시 개체별 건강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
 - 영세농가 우선 실시

★ 뉴캐슬병

- **실시대상** : - 부화장에서 부화된 초생추
- **실시기간** : '98. 2~12
- **소요경비**
 - 약품비 : 수당 5원
 - 국비 : 100%
- **기타**
 -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철저(예방약 수불대장 비치, 기 사용한 예방약 공병 확인 등)
 - 부화장은 병아리 수송상자 등에 사용한 예방약 및 접종일시 등을 기록하여 양계농가가 추가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
 - 시·도지사는 부화장에서 분무예방 접종에 사용되고 남은 물량을 양계지역 공동방역사업단에 음수예방추가 접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음

별첨 2

전염병 검진

★ **우결핵(PPD)**

- **실시대상** : 젖소 1세이상 전두수(제주도는 한·육우포함)와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의뢰한 한우·육우
- **실시기간** : 1~12월
- **소요경비**
 - 진단액(PPD) 구입비 : 두당 600원(국비 100%)
 - 실시재료비 : 두당 200원 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**실시요령**
 -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발생농장의 동거가축은 재검사 실시
 - 최근 2~3년 이내 우결핵 발생농장의 6개월이상 젖소 및 종축기관등에서 검사의뢰한 한육우와 전년도 검진시 누락된 소를 우선 실시
 - 경기도지사는 방역업무량을 감안하여 관내 검진대상 물량을 100천두로 조정하였으므로, 기발생하였던 농장과 그 인근 농장에 대하여는 매년 검진하고, 2년 이상 비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격년제 시행 등으로 확인검진을 실시할 것이며, 계획물량의 조정에 따른 지방비 예산차액(4,560천원)으로는 혈청검사사업과 유방염 방제사업 등을 확대실시토록 할 것

★ **부루세라병(M.R.T.)**

- **실시대상** : 관내집유장에 납유하는 목장별 착유우의 원유
- **실시기간** : 1~12월(분기별로 구분하여 4회 이상 실시)
- **소요경비**
 - 진단액구입비 : 1회용 300원 (국비 100%)
 - 실시재료비 : 건당 100원 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**실시요령**
 -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함
 - 실시회수 : 4회이상 실시

- 건당 1~50두 정도의 우군원유를 기준하여 시료채취에 철저
- 양성 및 의양성에 대한 개체별 추적검사를 혈청응집반응검사(Plate)로 실시
- 타시도 소재 목장의 소에서 양성 및 의양성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시도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에서는 개체별 추적검사 실시

● **기타**

- 유업체에서 검사를 의뢰한 가검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, 결과를 통보할 것
- MRT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의거 전두수 이동제한 조치하고 신속히 개체별 검사 실시
- ※ 제주도는 별도사업 계획에 의거 실시

★ **부루세라병(Plate)**

● **실시대상**

- 젖소 : MRT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의 전두수 및 타시도에서 MRT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통보된 목장의 전두수
- 한·육우 :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를 의뢰한 종축 등

● **소요경비**

- 진단액구입비 : 두당 250원(국비 100%)
- 실시재료비 : 두당 200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※ MRT결과에 따른 진단액의 과부족에 대하여는 수의과학연구소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할 것.

● **실시요령**

-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함
- 동거가축 또는 의심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체별(한육우 포함) 검사를 실시
- 유산등 부루세라병의 의심우군에 대하여는 개체별로 검사 실시

● **기타**

- 유업체 등에서 검사의뢰된 가검물에 대하여는 검사실시후 결과통보 할 것

※ 시험관응집반응법, 보체결합반응법 등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진단시약에 대하여는 수의과학연구소와 협의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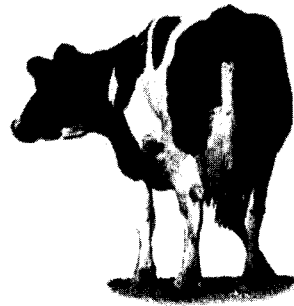
★ 제주도 부루세라병(Rose-Bengal)

- 실시대상 :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
- 실시기간 : 1~12월
 - 1차 검사 : Rose-Bengal
 - 2차검사 : Tube Test, CF 또는 ELISA
- 소요경비
 - 진단액(Rose-Bengal)구입비 : 두당 250원 (국비 100%)
 - ※ 2차검사 진단액은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생산
 - 실시재료비 : 총 466,900천원 (국비 30%, 지방비 70%)
- 기타
 -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부루세라병 근절계획에 의거 '98 부루세라병 검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, 우리부에 보고하고 추진
 - 양성축과의 동거가축등에 대하여는 축주로 하여금 자진도태토록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

★ 추백리

- 실시대상 : 종계장의 종계
 -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에 의함
- 실시기간 : 1~12월
- 소요경비
 - 진단액구입비 : 수당 80원
 - 국비 100%
 - 실시재료비 : 수당 100원
 - 국비 50%, 지방비 50%
- 기타
 - 시·도지사는 매월 검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
 -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을 철저히 이행하여, 마실시 종계

- 장은 고발, 종계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.
- 종계장별 진단액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 확인.
- 가축위생시험소의 확인검사결과 1%미만 양성계군에 대하여는 양성계를 살처분후 보상금 지급
- 지역별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농가에 우선 실시
- 병아리를 분양한 종계장을 확인하여 추백리 발생시에 추적조사 실시



별첨 3

● 기생충 구제

★ 소진드기

- 실시대상 : 진드기 서식지의 사육소(전기업 양축 농가 제외)
- 실시기간 : 4~10월
- 실시요령
 - 진드기 서식지 및 바베시아병, 타이레리아병 다발지역 우선 실시
 - 진드기 출현시기에 맞춰 시·도 단위로 구제일정을 정하여 일제히 실시
 - 실시간격 : 10~20일
 - 축체에 분무 또는 약욕 실시
 - 특히, 제주도는 전기업농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진드기 구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·계몽 강화
- 구제약품비 : 두당 75원
 - 국비 70%
 - 지방비 30%
- 시도지사는 자체적으로 타이레리아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계도

★ 소간질충

- 실시대상 : 간질감염농후 지역에서 사육중인 소
- 실시기간 : 4~10월
- 소요경비
 - 약품비 : 두당 800원
 - 국비 : 70%
 - 지방비 : 30%
- 실시방법
 - 소간질 감염우려 지역인 강·하천 주변지역과 간질검진사업 실시결과 양성율이 높게 확인된 지역에서 사육중인 소에 투여

★ 꿀벌응애류

- 실시대상
 - 개량 양봉농가의 봉군
- 실시기간 및 방법 : 2~4월중(3회 실시)
- 소요경비
 - 약품 : 1군당 2,100원(700원×3회)
 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기타
 - 꿀벌응애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애류 구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것
 - 약품사용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
 - 시도지사는 꿀벌응애류 전염특성상 전국 동시 다발적인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필요한 경우 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구제약품이 적기에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

★ 꿀벌노제마병

- 실시대상
 - 개량 양봉농가의 봉군 우선
- 실시기간 및 방법 : 2~4월 중 2회 실시
- 소요경비
 - 약품비 : 1군당 1,200원(600원×2회)
 - 국비 : 70% · 지방비 : 30%
- 기타
 - 시도지사는 꿀벌전염병의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필요한 경우 한국양봉협회의와 협의하여 구제 약품이 적기에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
 - 약품사용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